

## 목포시가로수관리조례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2년 7월 15일
- 나. 제출자 : 목포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2년 7월 22일
- 라. 상정일자 : 2002년 7월 23일

### 2. 제안설명요지

#### 가. 제안설명

- 제216회 임시회 본회의 (제1차) :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
- 경제건설위원회 : 농림과장 김 복 수

#### 나. 제안이유

- 시내 24개 노선에 11,590주의 가로수를 종전에는 도로법에 의한 「도로부속물」로 관리하여 왔으나 산림기본법(2001. 5. 24 법률 제6477호)과 산림청예규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(2002. 1. 2 산림청 예규 499호)이 제정되어
- 우리시에서도 본 규정에 따라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# 다. 주요골자

- 가로수의 갱신 및 보식 등 사후관리 규정 (안 제4조)
- 가로수의 손괴자 부담금 징수등의 규정 (안 제5조)
- 가로수의 시민관리제 규정 (안 제7조)
- 가로수 관리의 전문업체 위탁에 관한 규정 (안 제8조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생 략”

### 4. 위원회 활동

- 제216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(2002. 7. 23)
  - 제안설명 청취, 질의·응답 및 심사결정

### 5. 토론요지

- 본 조례는 산림기본법과 산림청 예규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의 상위법에

의한 조례 제정으로 현재까지는 가로수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부속물로 관리하여 왔으나,

- 시민이 관리자로 지정될 때 필요한 재료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,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 조경업체에게 위탁관리도 가능케 되어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조례가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6. 심사결과

**【원안가결】**